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|-----|
| 의안번호 | 742 |
|------|-----|

2009년 2월 24일
교육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월 21일, 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1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1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
(2009년 2월 16일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평생교육국장 이정곤)

가. 제안이유

- 도서관, 평생학습관의 지역적 · 기관별 특색을 반영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강습 · 교육 참여자 중 저소득자, 장애인, 노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수강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자의 대출정지 기간을 1인당 1년 이내로 명시함(안 제2조의2 제2항).
- 관장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- 강습 · 교육 참여자 중 저소득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노인 등의 수강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9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- 동 조례안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자의 대출정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, 저소득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노인 등의 수강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,
- 안 제2조의2제2항의 연체료와 관련하여, “대출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”라는 현행조례의 규정이 “1책당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되”라는 동 조항의 전반부로 인해 대출정지 기간이 1책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.
- 즉 대출자의 경우 1인당 3권을 대출할 수 있음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출정지 기간을 3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정지 기간 앞에 1인당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대출정지 기간이 1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1인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출자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.
- 안 제8조 무료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, 현재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는 일부 무료프로그램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고 예산상의 문제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, 동 조례안에 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규 우수 프로그램의 개설과 소외계층 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다만 “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”이라는 개념이 매우 불명확하여 무료프로그램의 개설이 관장의 주관에 좌우될 가

능성이 있고, 무분별한 프로그램의 신설이나 인기에 편승해서 각 자치구청 및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.

- 안 제9조 수강료 감면과 관련하여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,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는 장애인, 노인, 국가보훈대상자 등 소외계층의 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고, 국내외적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의 가계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를 소외계층에 대한 수강료 감면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현재 도서관 및 평생교육관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소외계층의 참여도가 극히 낮은 것은 단순히 수강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에서 비롯된 부분도 적지 않으므로 수강료 감면과 더불어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,
- 또한 부족한 예산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수강료 감면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
- 결론적으로, 동 조례안은 도서 반납 연체에 대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도서대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, 무료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 교육의 저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며, 수강료 감면 규정의 신설을 통해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 : 무료프로그램의 선정에 있어서 그 범위가 매우 불명확하여 관장의 주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?
- 답변 : 무료프로그램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프로그램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음.

5. 토론효지 : 없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 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 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-